

제39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2월9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1)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5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5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5)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5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7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29)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0)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9)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7)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1)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9)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8)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6)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6)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9)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3)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77)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21)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177)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390)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590)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60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709)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710)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3)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1)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49)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80)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1)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0)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50)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0)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50)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83)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154)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611)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359)
46.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방안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1)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4)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3)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5)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1)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4)	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9)	4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0)	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9)	4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2)	4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	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	4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1)	4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9)	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8)	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8)	4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6)	4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6)	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9)	4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9)	4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2)	4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5)	4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3)	4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4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4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7)	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0)	4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0)	4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4)	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9)	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0)	4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3)	4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8)	4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1)	4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9)	4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0)	4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1)	4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0)	4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0)	4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0)	4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0)	4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3)	4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4)	4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1)	4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359)	4
46. 업무보고	5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방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법률안을 상정하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태년 먼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4건의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44항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다만 이 6개의 법률안이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1)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5)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5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7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429)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430)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899)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13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447)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4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841)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119)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34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648)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326)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746)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77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789)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1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43)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977)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21)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77)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90)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590)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0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09)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10)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173)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431)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49)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180)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111)
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330)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350)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430)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50)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83)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54)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11)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59)

(10시06분)

○위원장 김태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명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법률안을 주제별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7항, 30항, 31항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 확진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대통령선거일까지 지속되거나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대규모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여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들은 거소투표자 확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투표시간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표소를 설치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 확진자 격리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추가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등이 외부출입 없이 동 격리시설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이들의 참정권 보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바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세부조문들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토록 하는 등 일정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시행시기와 세부내용 간에 상충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5항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과 본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으로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만

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이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할지 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안 등은 기본적으로 여성, 장애인,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이들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적용시기 및 재원 확보 관련입니다.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의 준비기간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선거, 즉 대통령선거부터 바로 적용할지 혹은 지방선거나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재원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청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개정안마다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청년의 공직후보자 의무추천비율을 정하는 경우 각 정당에서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청년을 추천한 경우 이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46. 업무보고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방안

(10시10분)

○위원장 김태년 의사일정 제4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달 9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안 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책 등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두 차례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 하향, 확장장치 소음기준 마련 및 재외선거 제도개선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양대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으로 선거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나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관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20대 대통령선거 개요는 생략하고, 2쪽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한 참정권 보장 방안을 유지·확대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확진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중전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확진판정을 받은 자는 거소투표 신고 후에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리고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후에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자는 특별사전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였고, 미확진 자가격리

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투표 참여 신청한 후 선거일 1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수령한 후 일반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번호표 순으로 투표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중전 대비 선거권 보장 확대 방안입니다.

핵심은 중전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확진자의 경우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에게 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외출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입원치료자의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방역지침상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심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투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2일 차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사전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하게 되고, 선거일 투표 역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본인의 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거소투표 신고 확진자가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해당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안내하여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약 85억 원 정도로 확진자 전담 사무원 사례금과 레벨D 방호복 세트 구입비입니다.

각 부처 필요사항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일·선거일 이동 허용 지침, 외출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는 투표대상 확인·신청, 투표소 이동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개표소 방역과 관련하여 확진자 접촉 임시기표소 전담 사무원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투·개표 사무관계자 전원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한편 투·개표소 사용 전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하여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출석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1·2소위가 순차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늘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체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두 분, 그다음에 민주당 두 분……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장 김태년 정의당 한 분……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께서 맨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우선 법안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총장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종전 방안으로 투표할 수 없는 확진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 저는 중앙선관위의 자세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면서 방역지침을 언급한다? 저는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서는 항상 모든 선거에 있어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러한 표현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참정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김성원 위원 초점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총장님, 무조건 이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제시된 대로 참정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7일 날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 말 확진자 수가 약 13만에서 한 17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대로 치자면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나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약 39만 표와 57만 표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 민심과 왜곡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사무총장 중심으로 좀 더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참정권 보장이 최대 목표이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간 질병청하고 작년 연말부터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등 참정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행사하지 못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번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전혀 차질 없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국회의원에서 정부 고위관료에게 공개적으로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해 달라’ 이런 발언,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2월 15일 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절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그다음에 홍정민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신 거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안 했습니까?

○**장경태 위원** 예.

○**위원장 김태년**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 총장님, 대선이 오늘로 28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오늘 보니까 4만 명, 5만 명까지 또 육박한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사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참정권만 가지고 지금 선관위에서 업무보고 하는 느낌, 법안도 이런 쪽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 보장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런 부분에 가장 의혹 제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 투표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면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난번에는 자가격리자를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후에 선거일까지 확진자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인원도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하고 그들의 외출 허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지침에 관해서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민철 위원** 그러면 그 개정을 하면 다 해결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개정하고, 각각 외출 시간을 투표시간 내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5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추정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외출을 동시에 해서 전국적으로 50만, 100만을 풀어 놓겠다는 생각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질병청에서 70만으로 추정을 하

고 있는데 100만으로 가정하더라도 1만 4000여 개의 투표소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염려스럽기는 한데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지금 발병률을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서울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100만 기준으로 보면 투표소당 한 20명 남짓 됩니다. 그래서……

○**김민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특별투표소도 있는데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확진자나 미확진 자가격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별도의 투표시간 이후에 할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이 있는 곳은 한두 군데 특별투표소를 더 설치해서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약 외출이 된다면, 그리고 외출할 때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도 방역당국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쭙어보고 싶은 게, 선관위에서 케이보팅(K-voting) 방식의 투표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은 이미 개발돼 가지고 당내 경선이나 위탁선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 보니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 8960건 정도를 이렇게 많이 선거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문제점 나타난 것은 없었고요. 다만 그것은 공직선거에 사용을 하려면 일단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바탕이……

○**김민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보면 예산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요즘에 선관위에서 한정적으로 개발해 놓은 게 지금 블록체인하고 연계해서 개발해 놓은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은 또……

○**김민철 위원** 케이보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이럴 때 위급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표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편투표로 하게 되면 참정권에 대한 공정성, 비밀의 원칙에 상당히 부정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례도 선관위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케이보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동 경로나, 그 자리에서 다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이번이라도 그 방법으로 해서 대처하는 게 어떠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생각하고……

○김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 개정 하나만 하게 되면 방역 이런 부분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생각해볼 만한 방안의 하나는 될 수 있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그렇게 되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맞는 또 확진자 등 격리자의……

○김민철 위원 그것은 지금 방역당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 명부를 따로 또 해야 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실무적, 기술적으로 어떤지를 검토를 세밀하게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민철 위원 확진자와 그리고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질병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니, 물론 명단을 통보받지요.

○김민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이, 타깃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당내 경선하고 위탁선거에는 쓰고 있으나 그게……

○김민철 위원 거기 당내 경선하고 위탁만 쓰는 게 아니고 농협, 축협 이런 데서 다 쓰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생활주변 선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에 도입하려면 국민적인 어떤 신뢰, 안전성 그다음에 보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김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투표 못 할 사람까지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도 한번……

○김민철 위원 예.

○위원장 김태년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5만 명, 재택치료자 16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3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 10만 명대로 치솟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전파력이 높은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확진자의 투표소 방문이 자칫해서 대량 확진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투표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확진자와 비감염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처럼 투표 마감시간 전에 번호표를 배부하는 방식은 이번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동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상황에서 감염이 또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배부받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증상 자가격리자였는데 오미크론만큼의 전파력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난번 방법과 같은 식으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확진자, 비감염자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조정하는 것도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비감염자는 현행대로 오후 6시까지 하고 확진자는 6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저희 입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100만 명 추

산하더라도 현행 21대 총선 또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점은 질병청하고도 회의 때 동선을, 투표소 구분을 합니다. 분리를 하고요, 또 대기 장소도 각각 다르게 하고.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은주 위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관계자이기도 한데, 행안부에서도 참석하셨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예.

○이은주 위원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투표소까지의 이동 방법 또 투표소 내에서 비확진자와 확진자가 분리되는 대기 방안,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실장 최훈입니다.

지금 선관위 주재로 질병청하고 행안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바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선 분리나 대기 관리 인원 대책까지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하고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지난 총선 당시에 수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견됐고 그래서 재외국민 전자투표법까지 발의가 된 상황인데, 실제 통과는 안 됐지만,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그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정권의 보장과 코로나로부터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위원님 재외선거도요 이번에 충분히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역정책도 다 파악이 된 상태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투표기간이라든가 시간 이런 조정 방안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기표소도 이번에 재외투표에도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해 주시고요.

미리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 사무총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의 오미크론 상황이 전혀 발생하기 전의 일이지만 저도 한 1월 정도에 이 관련 법을 발의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마 아까 보고하신 대로 기존 방안에 가까운 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당시 방역지침상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자가 매우 많았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참정권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꾸준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정말 갑작스러운 오미크론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뀔으로써 사실은 자가격리자는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확진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일단은 감염병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중요해진 이슈는 사실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이게 얼마나 빨리 조기에 될 것인가가 걱정인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확대 방안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다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전투표는 현재로서는 장소가 어디든 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홍정민 위원 그리고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선거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아까 말한 대로 100만 명을 잘 적절히 분산하면 된다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일시 외출허가를 받았을 때 분산까지도 고려가 되는 식으로 지금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런데 분산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외출허

가를 받으려면 확진자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로 외출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저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노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바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발병률이 제일 높거든요.

100만 명으로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개략적으로 20만 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투표 때 허용하더라도 6일부터 9일까지 발생하는 것, 또 7일간의 격리기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하더라도 최대치를 놓더라도 한 20만 명으로 보면 18세 이상으로 85%, 그다음에 투표율, 지난번에 국선 때는 한 20% 남짓 됐고요. 재보선 때 한 19% 정도 됐는데 대선이니깐 높다고 보고 한 30%로 본다고 쳐도 최대치가 한 20명 남짓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난 국선하고 재보선 때 시간 측정해 보니까 한 사람당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30분,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한 40분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 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평균이 20명이지 많은 곳은 또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100으로 할 때 플러스 100인 곳을 40명으로 놓더라도 1시간 이내면 투표 관리가 가능하단, 이런 정도 지금 실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정민 위원** 말씀을 지금 들어 보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소하고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소 선택이 자유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일 투표는 투표구마다 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게…… 물론 선거일 투표는 당해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질병청에서도 허가를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다가 해야 되니까 사전투표라고 그래서 막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질병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단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집단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전투표소로 분

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부 시행규칙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질병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확진자 등과 관련해서 이게 법 개정 없이도 확진자 등의 투표권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전에 21대 총선에서 실시했던 소위 임시기표소를 마련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임시기표소는 그때는 급박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소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소위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의 2·3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 개정 없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소위 임시기표소 규정을 활용해서 확진자나 격리자를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당에서 각각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법률을 내놔던 거고 그리고 투표시간 연장이 안 되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소위 임시기표소나 인근 집결장소에 도착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선거법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확진자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한 장소에 모아 두겠다라는 발상 자체도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답변드릴

까요?

○정점식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입법취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투표소, 투표 편의가 제대로 안 된 장소가 불가피하게 지정이 되면 임시기표소를 통해서 이동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21대 총선 때 문제가 되니까 이동약자의 적극 해석을 통해서……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임시기표소를 전 투표소에 걸쳐서 설비를 했어요.

○정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들의 참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기표소 운영하는 것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점식 위원 아무리 감염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총장님, 아무리 감염병 확진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불법·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편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참조해달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소위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총선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정점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면 같이 답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정점식 위원 사전투표에 대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일부 소위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등에 대한 CCTV 설치 등 법률안을,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의 경

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소위 투표를 하고 우체국에 접수시킬 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우체국에 몇 건을 접수시켰다라는 것 그 자체만, 통수만 계산을 하고 여기서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을 하면, 또 우체국에서 우리 선관위에다가 회송용 봉투 몇 건이 접수되었다라는 총계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일단 접수는 접수기로 해서 봉투에 쓰여진 내역까지 다 접수가 됩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서초1동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접수를 시킬 때 어느 선관위로 몇 통을 접수시켰는지도 계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정점식 위원 그것은 안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전국에 걸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을 다 일일이 하는 것은 또 시간의 제약도 있고……

○정점식 위원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소위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총계 몇 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외 사전투표수 투표지를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 통계는 나오지요.

○정점식 위원 그리고 전국의 각 선관위에서 몇 통이 접수가 되었다 이것을 같이 맞춰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배달이 6시 이후에 된 것들도 있고 해서 기권으로 처리된 것들 있고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서 그것은 안 맞춰봤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맞춰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의 답을 좀 마저 드리면 이게 등기번호를 부여해서 접수하고 발송하고 하기 때문에, 등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분실되거나 소홀히 될 염려성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점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분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총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의혹들을, 불신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저기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면 아까 홍정민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도 드렸지만 100만 명으로 추산해서 서울이 가장 최대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볼 때도 최대 100만 명으로 보면 시도별 발병률로 보면 한 20만 정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20만이면 서울의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20명 남짓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많은 데는 많을 수가 있으니까 100% 더해져도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지금 이미 방역당국하고, 40명 외출 허가 시간 또 그다음에 투표소의 장소, 아까 이은주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선도 분리하고 대기 장소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방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크게 없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11시에 아마 행안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출석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는 11시에 종료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질의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선거도 다 똑같겠지만 이번 대선이야말로 여야가 경쟁이 치열하니만큼 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2월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선 경선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5건 정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말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선관위 직원 약 2900여 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마는 절대로 선관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의 부정적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했다’ 아니면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등등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 등의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하자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사전투표 현수막 등에 대해서 어쩌면 똑바랐다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일각의 국민들은 현수막 등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의혹들이 이번에는 크게 생기지 않도록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잘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투표율을 좀 높이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총장님, 3월 9일 투표 때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임시투표소가 설치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3월 9일

본 선거일 투표에는 안 됩니다.

○조해진 위원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조해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것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설치를 합니다.

○조해진 위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조해진 위원 왜 두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일단 사전투표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일반 투표소는 읍·면·동 관할 구역의 투표구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투표소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본투표 때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이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임시투표소를 만들어서 하게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법을 개정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역당국하고 그분들도 외출 허가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게끔, 어차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나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사전투표 때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돼 계신 분들의 주소가 거기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용시설의 수용 능력 때문에 타지에 가서 계신 분들 경우에는 현지 투표가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주소지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일반투표 때요?

○조해진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홍정민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점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코로나 격리자들이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니요. 아까 홍정민 위원님 말씀이 좀 분산하는 쪽에서…… 사전투표 때도 가까운 곳에 저기 하니까,

사전투표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투표 때는 자기 주소지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몰릴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하는 측면에서 사전투표 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지난 총선 때 6시 이후에 도착해서 대기표 받았다가 투표한 경우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조해진 위원 그분들은 6시 이후에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는 6시 땡 하면서 나왔잖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아닙니다. 지난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관련해서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조해진 위원 대기자들 투표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출구조사 발표가 났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완전 종료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존의 임기만료 선거 때 6시 땡 되면 출구조사 발표가 났잖아요. 투표소에 대기하고 여전히 번호표 받아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격리자들 투표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시간을 늦춰서 출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하는 분들 가운데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확진자 투표 종료 예측 시간 이후로 방송 3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해진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투표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투표 종료되기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발표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투표 비밀침해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각별히 그 점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투표 비밀침해죄가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그것을 금지

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9시까지 연장되게 된다면 출구조사도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지 그 이전에, 격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 투표가 종료됐다고 해서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매번 그렇게 해서 방송 3사에 각별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년 예.

○조해진 위원 지금 법안 개정안 제출돼 있는 것들 중에는 코로나 격리자들도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일단 지금 현재로는 현행 법률로도, 현행 38조 가지고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들한테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조해진 위원 신고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가 끝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13일……

○조해진 위원 끝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조해진 위원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법적 근거만 생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현행법 해석 가지고도 그들한테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해석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법률안 심사와 중앙선거위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 결과에 따라서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오후에 국회에 대기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한없이 대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5시 이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개최를 하게 되면 5시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5인)

강 대 식	김 민 철	金 炳 旭	김 성 원
김 승 남	김 영 배	김 태 년	박 성 민
이 은 주	이 정 문	이 탄 희	장 경 태
정 점 식	조 해 진	홍 정 민	

○청가 위원(3인)

강 민 국	전 주 혜	정 춘 숙
-------	-------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 지 원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 정 안 전 부	최	훈
지 방 자 치 분 권 실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세 환
선 거 정 책 실 장	김 진 배